

##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 (안)

###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9년 4월 29일

나. 회부일자 : 1999년 4월 29일

3. 제안이유

근로활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업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4. 주요골자

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책인 만큼 참여대상자의 범위를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의 자녀로

한정함.(안 제3조)

나. 근로활동 운영시기는 재학생들의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으로 함.(안 제4조)

다. 근로활동 신청은 희망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고 제반서류의 확인이 용이한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가 확정함.(안 제5조)

라. 근로활동에 참여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토록 함.  
(안 제8조)

## 5. 검토의견

충청북도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근로활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근로활동 참여 대상자는 도내에 주소를 둔 도민의 자녀로 하고, 운영시기는 여름 및 겨울방학으로 하며,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가 확정하도록 하였으며,

근로활동에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 학비마련에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던 것을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학생근로활동 지원사업은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도재정 지원사업으로의 타당성, 수혜의 형평성, 사업효과 등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붙 임

○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